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3. . . (제 회)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을 설정하고,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취득자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기준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9210호, 2022. 12. 31. 공포, 2023. 7. 1. 시행)됨에 따라, 15세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 절차,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취득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지급제한 요건을 보다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외국인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범위 명확화(영 제3조의4 신설, 영 제145조의2 개정)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내국인과 동일한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을 당연적용하고 단기 취업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재외동포에 해당하는 외국인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임의가입 대상으로 정함

- 1 -

나. 15세 미만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임의가입 절차 신설(영 제104조의5, 영 제104조의11 개정)

15세 미만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중 임의가입을 원하는 경우 사업주, 노무제공 사업의 사업주, 플랫폼 사업자 등이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도록 하되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의가입 절차를 정함

다. 복수 피보험자격자의 소득감소로 인한 수급자격 인정사유 및 대기기간(영 제62조의2 신설, 영 제104조의8 및 제104조의15 개정)

주된 일자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후 다른 주된 일자리를 얻기 위한 재취업 활동 등으로 부업을 유지하기 어려워 부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한 소득감소 요건과 수급자격 인정 시 구직급여 대기기간을 정함

라.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제한 요건 강화(영 제24조 개정)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 신설, 증설하는 사업주가 고용위기 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역 내 순 고용창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 문제가 있어 고용일 이전 3년 중 2년 이상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를 채용 시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마. 기타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영 제3조 등 개정)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유산·사산 휴가 중 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유

산·사산 휴가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예술인·노무제공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았거나 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4. 주요토의과제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소정근로시간”을 “해당사업에서 소정근로시간”으로, “사람”이란을 “근로자”란으로 한다.

제1장에 제3조의4 및 제1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4(외국인예술인 및 외국인 노무제공자에 대한 적용) 법 제10조의 2제2항에 따른 외국인예술인 및 외국인노무제공자에 대한 법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예술인 또는 외국인노무 제공자: 법 제1장, 제2장, 제4장, 제5장의2, 제5장의3, 제6장, 제8장 또는 제9장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영주(F-5)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예술인 또는 외국인노무 제공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 법 제1장, 제2장, 제4장, 제5장의2, 제5장의3, 제6장, 제8장 또는

제9장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제11조의2(피보험자격을 취득기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월평균보수(영 제21조의3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지원금 지급이 개시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를 말한다)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 ②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예술인이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근로계약,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 또는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1.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2.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과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3.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과 둘 이상의 근로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의 이중 취득의 제한에 관하여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다.
- ③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노무제공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1.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2. 노무제공계약과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3. 노무제공계약과 둘 이상의 근로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의 이중 취득의 제한에 관하여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다.

제24조제6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고용일 이전 3년 중 2년 이상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이 된 근로자를 제1항제4호에 따라 고용하는 경우

제62조의2 및 제7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취득시 수급자격의 인정) 법 제43조의2 제2항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 감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득 감소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피보험자격을 동시에 상실한 경우에는 선택하지 않은 피보험자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 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이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 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에 해당할 것
2.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의 이직일 이전 1개월 간 해당 피보험자격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선택한 피보험자격의 이직일 이전 1개월 간 해당 피보험자격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의 100분의 50 미만일 것
3.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의 이직일 이전 1개월 간 해당 피보험자격으로부터 발생한 일 평균 소득이 이직일 당시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최저구직급여일액(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일 것

제71조의2(대기기간) 법 제4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2주를 말한다.

제93조의2 중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를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로, “제75조부터”를 “제71조의2, 제75조부터”로 한다.

제102조 전단 중 “종료일로”를 “종료일 다음 날”로, “유산·사산휴가기간”을 “유산·사산휴가기간(법 제76조의2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로부터 해당 유산·사산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03조 전단 중 “급여등”을 “급여등 또는 법 제76조의2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급여등”을 “급여등”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04조 본문 중 “법 제77조”를 “법 제77조제1항”으로 한다.

제104조의5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법 제77조의2제1항의 문화예술영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른 발주자 및 원수급인은 15세 미만의 예술인이 법 제77조의2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15세 미만 예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입신청사실을 사업주, 발주자 및 원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 15세 미만 예술인 예술인

은 가입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단기예술인의 경우에는 그 가입의 사유가 발생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⑦ 제5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15세 미만 예술인이 고용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퇴를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제104조의6제2항 중 “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을 “단기예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104조의8제5항 중 “4주를 말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를 “제61조,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로 한다.

1. 법 제77조의3제6항제1호: 4주
2. 법 제77조의3제6항제2호: 2주

제104조의10의 제목 “(예술인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의 심사 등)”을 “(예술인의 피보험자격확인 등의 심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을 “피보험자격 확인·구직급여·출산전후급여등”으로 한다.

제104조의11제1항제11호가목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을 “수출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법 제77조의6제4항에 따른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또는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이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라 한다)는 15세 미만의 노무제공자가 법 제77조의6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15세 미만의 노무제공자가 원하는 경우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입신청사실을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및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 15세 미만 노무제공자는 가입 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그 가입의 사유가 발생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⑦ 제5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15세 미만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퇴를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제104조의12제3항 중 “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이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를 “단기노무제공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104조의13제1항 중 “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이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라 한다)”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로 한다.

제104조의15제5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를 “제61조,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로 한다.

3. 법 제77조의8제6항제2호: 2주

제145조제1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2의2. 법 제73조·제73조의2 및 제74조제2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과 지급제한

제145조제1항제13호 중 “법 제75조·제77조”를 “법 제75조·제77조제1항”으로, “법 제76조의2”를 “법 제76조의2·제77조제2항”으로, “금액의 지급”을 “금액의 지급과 지급제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의2 및 제13호의3 중 “지급”을 각각 “지급과 지급제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제104조의5제5항에 따라 본인이 직접 가입을 신청한 15세 미만 예술인에 대한 보험 가입 신청의 수리 및 가입 신청 사실의 통보
14. 제104조의5제7항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15세 미만 예술인의 탈퇴 신청의 수리
15. 제104조의11제5항에 따라 본인이 직접 가입을 신청한 15세 미만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 가입 신청의 수리 및 가입 신청 사실의 통보

별표 3 제2호바목 위반행위란 바목 중 “법 제77조의5제3항 및 제77조의10제3항”을 “법 제77조의5제3항·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제4항”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위반행위란 사목 중 “법 제77조의5제3항 및 제77조의10제3항”을 “법 제77조의5제3항·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제4항”으로 하며, 같은 호 아목 위반행위란 아목 중 “법 제77조의5제3항 및 제77조의10제3항”을 “법 제77조의5제3항·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제4항”으로 하고, 같은 호 자목 위반행위란 자목 중 “법 제77조의5제3항 및 제77조의10제3항”을 “법 제77조의5제3항·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제4항”으로 하며, 같은 호 차목 위반행위란 차목 중 “법 제77조의5제3항 및 제77조의10제3항”을 “법 제77조의5제3항·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제4항”으로 하고, 같은 호 카목 위반행위란 카목 중 “법 제77조의5제3항 및 제77조의10제3항”을 “· 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제4항”으로 한다.

- 12 -

제2조(지역고용촉진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6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으로 신규 지정되거나 지정기간이 연장된 지역의 사업주가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고용계획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 행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① 법 제 10조제1항제2호에서 “<u>소정근로 시간</u>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간 미만인 사람”이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 5시간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 을 말한다. 다만, 3개월 이상 계 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 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 는 제외한다. ② (생 략) <<u>신 설</u>>	개 정 안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① --- -----해당사업 <u>에서 소정근로시간</u>----- -----근로자”란-----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u>제3조의4(외국인에출입 및 외국인에 노무제공자에 대한 적용) 법 제 10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에 출입 및 외국인노무제공자에 대 한 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다.</u>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외국인에출입 또는 외 국인노무제공자: 법 제1장, 제 2장, 제4장, 제5장의2, 제5장의 3, 제6장, 제8장 또는 제9장의
---	---

- 14 -

- 13 -

<신 설>	격을 가진 사람 제11조의2(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월평균보수(영 제21조의3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지원금 지급이 개시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를 말한다)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②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예술인이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근로계약,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 또는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1.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2.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과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3.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과 둘 이상의 근로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의 이중 취득의 제한에 관하여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다.
--------------------	--	--	--	---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① ~ ⑤ (생 략)	③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노무제공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1.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2. 노무제공계약과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3. 노무제공계약과 둘 이상의 근로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의 이중 취득의 제한에 관하여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다.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1. ~ 6. (생 략) <신 설> 7. (생 략) ⑦ 사 제 ⑧ (생 략) <신 설>	⑥ ----- ----- ----- 1. ~ 6. (현행과 같음) 7. 고용일 이전 3년 중 2년 이상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이 된 근로자를 제1항제4호에 따라 고용하는 경우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⑧ (현행과 같음) 제62조의2(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취득시 수급자격의 인정) 법 제43조의2제2항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 감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득 감소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피보험자격을 동시에 상실한 경우에는 선택하지 않은 피보험자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 법 제77조의6제2항	
-------------------------------------	---	--	--	--

	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이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 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에 해당할 것 2.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의 이직일 이전 1개월 간 해당 피보험자격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려는 사람이 선택한 피보험자격의 이직일 이전 1개월 간 해당 피보험자격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의 100분의 50 미만일 것 3.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의 이직일 이전 1개월간 해당 피보험자격으로부터 발생한 일 평균 소득이 이직일 당시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최저구직급여일액(소정 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일 것 제71조의2(대기기간) 법 제4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주를 말한다.	
<신 설>		
		제93조의2(준용)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 관하여는 제58조,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9조, 제61조(제3항은 제외한다),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79조부터 제83조까지, 제8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102조(준용) 출산전후휴가기간(법 제76조의2에 따른 근로계약종료일로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한다)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중의 취업의 신고 등에 관하여는 제9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으로 본다. 제103조(준용) 법 제75조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으로 본다.
		제93조의2(준용) ----- ----- -----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제71조의2, 제75조부터----- ----- -----. 제102조(준용) ----- ----- 종료일 다음 날----- ----- 유산·사산휴가기간(법 제76조의2에 따른 근로계약종료일 다음 날로부터 해당 유산·사산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한다)----. ----- -----. 제103조(준용) ----- ----- 급여등 또는 법 제76조의2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론 발주자 및 원수급인은 15세 미만의 예술인이 법 제77조의2 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15세 미만 예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입신청 사실을 사업주, 발주자 및 원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04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감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7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3조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또는 유산·사산휴가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법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합한 금액이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서 빼고 지급한다. 다만, 휴가기간 중에 통상임금이 인상된 피보험자에게 사업주가 인상된 통상임금과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차액을 지급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104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감액) ----- 법 제77조제1항----- ----- ----- ----- ----- ----- ----- ----- ----- ----- -----.	⑥ 제5항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 15세 미만 예술인은 가입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단기예술인의 경우에는 그 가입의 사유가 발생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4조의5(예술인인 피보험자의 범위) ① ~ ④ (생략)	--.	⑦ 제5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15세 미만 예술인이 고용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퇴를 신청한 날의 다
<신 설>	제104조의5(예술인인 피보험자의 범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77조의2제1항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	
<신 설>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u>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u>(이하 “<u>단기예술인</u>”이라 한다)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해당 계약 기간에 제공된 문화예술용역 일수, 계약금액 등이 적힌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단기예술인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 ~ ⑥ (생략) <u>⑦ 법 제77조의2제5항에 따라 예술인이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u> 1.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2.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과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3.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과 둘 이상의 근로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의 이중 취득의 제한에 관하여는 법 제18조에 따른다. 제104조의8(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77조의3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주를 말한다. <u><신설></u>	<u>을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u>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u>단기에</u> <u>술인</u>----- ----- ----- ----- ----- ----- ----- ----- ----- ----- ----- ③ ~ ⑥ (현행과 같음) <u><삭제></u>	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1.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2.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과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3.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과 둘 이상의 근로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의 이중 취득의 제한에 관하여는 법 제18조에 따른다. 제104조의8(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① ~ ④ (생략) ⑤ 법 제77조의3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주를 말한다. <u><신설></u>	제104조의8(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7조의3제6항제1호: 4주
---	--	--	--

⑥·⑦(생략)	2. 법 제77조의3제6항제2호: 2주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⑧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⑥·⑦(현행과 같음)	1. ~ 10.(생략)	1. ~ 10.(현행과 같음)
1. 구직신청, 수급자격의 인정, 실업의 인정, 취업의 신고, 수급기간, 구직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58조,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9조, 제60조,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 제64조(제3호는 제외한다),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제75조, 제76조, 제79조, 제80조, 제80조의2, 제81조 및 제82조	1. ----- ----- ----- ----- 제61조,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 ----- ----- ----- -----	1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또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11. ----- ----- ----- ----- 수출입 ----- ----- ----- -----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나. ~ 차.(생략)	나. ~ 차.(현행과 같음)
제104조의10(예술인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등의 심사 등) 예술인의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등의 심사, 심사위원회 및 제심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제104조의10(예술인의 피보험자격확인 등의 심사 등) ----- 피보험자격 확인·구직급여·출산전후휴가등 -----	12. ~ 17.(생략) ② ~ ④(생략) <u><신설></u>	12. ~ 17.(현행과 같음) ② ~ ④(현행과 같음) <u>⑤ 법 제77조의6제4항에 따른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또는 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이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라 한다)는 15세 미만의 노무제공자가 법 제77조의6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고</u>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① 법 제77조의6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① -----		

	<u>용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15세 미만의 노무제공자가 원하는 경우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입신청사실을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및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u>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②(생략)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②(현행과 같음)
<신설>	<u>⑥ 제5항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 15세 미만 노무제공자는 가입 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그 가입의 사유가 발생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u>	<u>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이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해당 계약 기간에 제공된 노무제공일수, 노무제공대가 등이 적힌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단기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u>	<u>③ ----- 단기노무제공자-----</u>
<신설>	<u>⑦ 제5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15세 미만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퇴를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u>	<u>④ (생략)</u> <u>⑤ 법 제77조의6제3항에 따라 노무제공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u>	<u>④ (현행과 같음)</u> <u><삭제></u>

<u>1.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u>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해야 한다.	-----
<u>2. 노무제공계약과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u>		<u>② ~ ⑤ (생략)</u>	<u>② ~ ⑤ (현행과 같음)</u>
<u>3. 노무제공계약과 둘 이상의 근로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의 이중 취득의 제한에 관하여는 법 제18조에 따른다.</u>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① ~ ④ (생략)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법 제77조의8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u>	<u>⑤ -----</u>
		<u>1. 2. (생략)</u>	<u>1. 2. (현행과 같음)</u>
		<u><신설></u>	<u>3. 법 제77조의8제6항제2호: 2주</u>
		<u>⑥ · ⑦ (생략)</u>	<u>⑥ · ⑦ (현행과 같음)</u>
		<u>⑧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u>	<u>⑧ -----</u>
		<u>1. 구직신청, 수급자격의 인정, 실업의 인정, 취업의 신고, 수급기간, 구직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58조,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9조, 제60조,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 제64조(제3호는 제외한다),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제75조, 제76조, 제79조, 제80조, 제80조의2, 제81</u>	<u>1. -----</u>
제104조의13(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신고 등) ① <u>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이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라 한다)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의 신고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노무제공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u>	제104조의13(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신고 등) ① <u>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u>		<u>제61조,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u>

조 및 제82조	-----
2. 3. (생 략)	2. 3. (현행과 같음)
제145조(권한의 위임 등) ① 법 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전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145조(권한의 위임 등) ① -----
1. ~ 3. 삭 제	-----
4. ~ 12. (생 략)	4.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2의2. 법 제73조·제73조의2 및 제74조제2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과 지급제한
13. 법 제75조·제77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과 지급 제한 및 법 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	13. 법 제75조·제77조제1항-- ----- 법 제76조의2·제77조제2항----- 금액의 지급과 지급제한
13의2. 법 제77조의3, 제77조의4 및 제77조의5제2항·제3항에 따른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	13의2. -----
13의3. 법 제77조의8, 제77조의9 및 제77조의10제2항·제3항에	13의3. -----

다른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 지급과 지급제한
14. ~ 26. (생 략)	14. ~ 26.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다.	②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제104조의5제5항에 따라 본인이 직접 가입을 신청한 15세 미만 예술인에 대한 보험 가입 신청의 수리 및 가입 신청 사실의 통보
<신 설>	14. 제104조의5제7항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15세 미만 예술인의 탈퇴 신청의 수리
<신 설>	15. 제104조의11제5항에 따라 본인이 직접 가입을 신청한 15세 미만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 가입 신청의 수리 및 가입 신청 사실의 통보
<신 설>	16. 제104조의11제7항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15세 미만 노무제공자의 탈퇴 신청의 수리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고용노동부장관(제14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1. 법 제10조의2 및 이 영 제3조의3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에 관한 사무	1. ----- 영 제3조의3·제3조의4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외국인예술인·외국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 등 적용 및 피보험자 관리 ---
1의2. ~ 17. (생 략)	1의2. ~ 17. (현행과 같음)
18. 법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법 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	18. ----- 지급에 관한 사무
19. ~ 25. (생 략)	19. ~ 2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연 락 처	(044) 202 - 7352